

## 안건 5. 정관 변경의 건

1) 주문사항: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제12조(임원의 선임)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네트워크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
2. 감사 3인 이내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비상임이사 13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네트워크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네트워크 정회원 중에서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4. 18.]

## 2) 개정 취지

첫째, 현행 정관에는 상임이사 규정이 없어 현재 네트워크의 조직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11조 제1항에서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규정하고, 개정안 제11조 제2항에서 이사의 종류와 정수를 규정함으로써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행 정관의 임원 규정은 모든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정관 제12조 제1항), 이 조항에 의거하면 이사장, 이사, 감사의 궐위 시 그 때마다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후 급변하는 정치적 국면에서 임원의 궐위 시 매번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

이고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임원(이사 및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수행하고(개정안 제12조 제1항),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로 호선으로 선출하며(개정안 제12조 제2항), 임기 중에 발생하는 임원의 궐위에 대해 이사회가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단, 네트워크 정회원으로 한정)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방식(개정안 제12조 제3항)으로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현행 제12조 제2항의 전단(“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자신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제14조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보선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제12조 제2항의 전단(“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규정은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3) 참고: 현행 정관과 비교

현행	개정안
<p>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네트워크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인</li> <li>2.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li> <li>3. 감사 3인 이내</li> </ol>	<p>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네트워크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 3인 이상 15인 이내</li> <li>2. 감사 3인 이내</li> </ol> <p>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의 종류 및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인</li> <li>2. 상임이사 1인</li> <li>3. 비상임이사 13인 이내</li> </ol>
<p>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을 포함한 네트워크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8.]</p> <p>③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 1. 21.]</p>	<p>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네트워크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한다.</p> <p>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이사회는 임원이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네트워크 정회원 중에서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궐위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4. 18.]</p> <p>④ 임원 선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신설 2017. 1. 21.]</p>